



건의

이 자료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관련 건의

-대한석유협회-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예정안건 중의 하나인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안과 관련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마련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중유에 특소세가 신규 부과되어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20원으로 인상될 계획으로 있음. 이 같은 중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LNG 세금은 고정시키는 한편 LNG와 중유간 가격경쟁력, 환경비용, 수급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 같은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변동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취지 및 원칙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세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민간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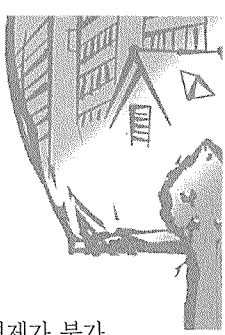
더구나 경쟁관계에 있는 LNG와 중유간 세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특소세만이 아닌 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을 합한 총 세금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인하로 민간사업자간 시장경쟁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유는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로 생산되는 반면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NG의 특소세 면제는 중유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즉, LNG 세금 면제 등에 따른 중유 수요의 LNG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국내 공급과잉인 중유의 저가 수출을 촉진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LNG의 수입을 장려하여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와 같이 LNG 특소세 면제는 단순히 LNG라는 한 개 유종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에너지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폐 업계는 중유 및 LNG 세제는 지난 1년 여 간 국민 전체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맞춰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임.

그러나, 만약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 경유 및 LPG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하여 세제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건의함.

LNG 특소세 면제관련 검토의견

1.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원칙 위배

- 정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단계적 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세제개편을 현재 추진중이며, 동 세제개편은 1년 여간의 국회,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임.
- 정부는 LNG와 중유와의 가격경쟁력, 환경비용, 수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NG 세금은 고정시키고 중유에 대한 특소세를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단계적으로 20원/리터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특소세법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동시에, 정부 정책만 믿고 이에 맞추어 생산, 수급 등 경영계획을 수립한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 불확실성 증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임.

- 또한, 일부 에너지에 대한 예외 인정은 현재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불만을 가진 다수 관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임.
- LNG에 대한 세금면제는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부탄 및 경유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세금인하 요구를 유발할 것이며, 특히 경쟁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프로판의 특소세의 동반 면제가 불가피하여,
- 궁극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취지 및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며, 부수적으로 큰 폭의 정부 세수감소로 연결될 것임.

2. 경쟁에너지원간 세제 형평성 유지

■ 일부에서는 B-C유와 LNG의 세금비교시 특소세만 상호 비교하고 있으나, 실제 양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을 합한 총 세금을 비교할 경우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7월에는 오히려 B-C유 세금이 더 높아지게 됨.

	LNG (A)	B-C유 (B)	열량당 세금 (W/천 Kcal)		차이 (A-B)	비 고
	(W/m ³)	(W/ℓ)	LNG(A)	B-C유(B)	(W/Kcal)	
관세	2.20	8.50	0.21	0.86	▲0.65	LNG:CIF 1% 원유: CIF 5% 기준가 20.51\$/B 환율1.318W/\$
부과금	7.88	14.00	0.75	1.41	▲0.66	LNG:9.750W/톤 원유: 14W/ℓ
특소세	32.31	20.00	3.08	2.02	1.06	LNG:40W/kg B-C유: 20W/ℓ (*0.6.7월 기준)
교육세	-	3.00	-	0.30	▲0.30	B-C유: 특소세의 15%
기타	3.90	0.12	0.37	0.01	0.36	LNG: 가스 안전 기금3.90W/m ³ B-C유: 품질수수료
계	46.29	45.62	4.41	4.60	▲0.19	0.122 W/ℓ

* 열량 기준 : B-C유 9,900 kcal/ℓ, LNG 10,500 kcal/m³

■ 즉, B-C유 및 LNG의 세금 수준이 비슷한 수준에서 LNG 세금만 인하시키는 것은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양 에너지원간 원가차이에서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정부가 세금 조정을 통하여 특정 에너지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사업자간의 시장경쟁을 세금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쟁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간 세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만약 LNG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B-C유 및 프로판의 세금도 그에 상응하여 인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B-C유 공급과잉문제 심화

■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상 휘발유, 등유 등 경질

유 생산을 위해서는 B-C유 등 중유 생산은 불가피하며, 향후에는 B-C수요 감소에 따라 B-C유 공급과잉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제품의 생산과정 특성상 연산품인 유종별 생산비율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휘발유, 등유, 납사 등의 공급안정을 위해서는 B-C유 생산은 불가피함.

■ 즉, 가뜰이나 국내 수요구조와 생산구조 차이에 따라 B-C유 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량 추가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LNG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B-C유 공급과잉 상황을 심화 시키고, 국가 전체적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저해하는 것임.

(단위: 천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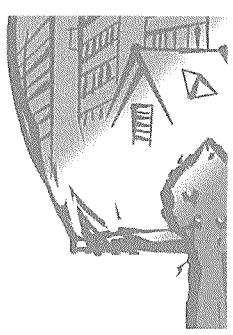
	2000년	2010년
생산량(A)	617	617
판매(B)		
-내수 판매	343	281
-국제병처리	99	99
잉여량(A-B)	175	238

* 2010년 중유 생산량은 2000년 생산량으로 가정(내수판매는 매년 2% 감소 전망)

4. 국제수지 악화 초래

■ LNG 세금 면제 등을 통한 B-C유의 LNG로의 수요 전환은 궁극적으로 B-C유의 저가 수출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LNG의 수입을 장려하여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 B-C유는 원유 도입후 국내 가공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 수입가격이 LNG대비 저가임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유발함.



- 즉, LNG대신 원유를 도입하여 B-C유 소비함으로써 국가전체적으로 연간 약 2.6억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발생시킴.

LNG(A)	원유(B)	차이(A-B)	'98년 중유수요	국제수지개선효과
29.14\$/B	27.04\$/B	2.1\$/B	125,328천 Bbl	263백만\$

* LNG : '00년 도입실적 259.60\$/톤(Bbl 환산계수 8.91)

** 원유 : '00년 도입실적 27.04\$/B

■ 또한, B-C유 소비는 현재도 수입소요가 많은 납사, 등유 등 정질유 생산에 기여하여 해당 유종의 수입을 그 만큼 감소시켜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반면 B-C유의 LNG로 수요전환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급상 LNG가격 상승 및 B-C유 수출가 하락을 촉진시켜 상대적으로 고가인 LNG수입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효과는 심화될 것임.

5. 국가 에너지 Security 문제 유발

■ 국가 산업용 연료를 B-C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경우 비상시 에너지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현행 LNG는 인수기지의 한계로 인해 장기계약에 따른 수급 Unbalance문제를 유발하는 등 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능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반면, 1, 2차 Oil Shock을 경험한 석유류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비축(38일 수준)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Security를 확보하고 있음.

6. 환경오염방지 등의 기술개발 촉진 저해

■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 방지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용 연료 대부분을 B-C유에서 LNG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이러한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임.

- 환경오염방지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은 향후 고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이며, B-C유 등 청정연료대비 탄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원의 지속적 사용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임.

- 즉, 에너지 사용을 LNG 등의 청정연료로 모두 대체하는 경우보다, 기술개발의 Incentive차원에서 B-C유 사용이 환경오염 방지 기술(배연탈황 기술 등)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임.

7. B-C유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고도화시설 건설관련

■ 잉여 B-C유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도화시설(중질유 분해·탈황시설)의 건설이 바람직하나, 동 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건설기간도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질석유제품과 중질 석유제품간의 적정 가격차이가 수반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막대한 투자비 및 장기간의 건설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LNG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시기상조이며, 석유제품은 LNG와 달리 이미 가격 자유화 및 수출입 자유화가 시행되어 고도화시설 투자비의 회수가 불투명한 점도 고려되어야 함.

8. LNG의 Clean인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석유에 비해 천연가스 쪽이 연소단계에서 CO₂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확대할 것을 하나의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효과 전체에 대해서 채굴로부터 연소까지의 합계치로 평가한 경우, 석유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각 에너지의 환경부하를 채굴로부터 수송·연소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학연료별로 본 채굴로부터 연소까지의 종합적인 온실효과

		석탄	석유	LPG	천연가스	LNG
CO ₂	생 산	3.24	0.28	3.87	0.28	8.29
	연 소	-	0.32	0.74	3.21	0.86
	수반CO ₂	-	0.03	0.52	3.42	3.42
	수 송	2.93	0.86	2.24	1.83	1.85
	정 제	-	1.96	1.06	-	-
	소 계	6.17	3.45	8.43	8.74	14.42
	연소(*1)	108.02	83.74	72.01	64.06	64.06
석유=100	129.0	100.0	86.0	76.5	76.5	
LNG=100	168.6	130.7	112.4	100.0	100.0	

		석탄	석유	LPG	천연가스	LNG
CO ₂	합계	114.19	87.19	80.44	72.80	78.48
	석유=100	131.0	100.0	92.3	83.5	90.0
메탄(CO ₂ 환산)		6.55	2.48	4.15	16.23	7.98
총계(*2)		120.74	89.67	84.59	89.03	86.46
	석유=100	134.6	100.0	92.3	99.3	96.4
	LNG=100	139.6	103.7	97.8	103.0	100.0

주1) 기화열을 뺀 실제 발열량기준으로 비교

주2) (*1) 연소 : 소비자(연소시) 발생하는 Case

(*2) 총계 : 생산~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ase

9. 건의사항

- 전술한 바와 같이 LNG특소세 면제는 단순히 LNG라는 한 개의 유종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에너지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에너지간의 시장경쟁에 정부가 세제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상호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B-C유 및 LNG의 세제는 국민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맞추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